

의안번호	제3115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7. 10.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15호
----------	--------

제출연월일: 2026. 7. 10.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과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에 따라, 고성군 박물관 시설 대관료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관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소비자분쟁의 해결)
-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
-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14996호(2026. 4. 2.)]

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설>	☐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폭언·폭행·성희롱·성주행·성폭력·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박물관의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검토의견 미반영 제8조(관람의 제한) 제3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미반영함.
☐ 제9조(행위의 제한)제1항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신설>	☐ 제9조(행위의 제한)제1항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현행과 동일) 4. 폭언·폭행·성희롱·성주행·성폭력·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검토의견 미반영 제8조(관람의 제한) 제3호에 포함되므로 미반영함.
☐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설> 5. <신설>	☐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검토의견 미반영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호는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촉할 수 있음. 특정 범죄 유형을 조례에 개별적으로 나열할 경우, 그 외 중대한 범죄나 비위 사실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일일이 명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으로 개선의견은 미반영함.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741호

가) 예고기간: 2026. 3. 30.~ 2026. 4. 20.(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된 대관료”를 “군수”로, “경우에 전액 반환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대관료의 반환) <u>납부된 대관료</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 전액 반환</u> 할 수 있다.	제19조(대관료의 반환) <u>군수</u> ----- ----- ----- <u>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한다.</u>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한 <u>경우</u>	1. ----- ----- ----- <u>경우: 전액 반환</u>
2. <u>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u>	2.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 <u>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의 규정을 준용한다.</u>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최 다 원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전액 환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휴업·정원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해지 시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금액 적용) 환불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 입회금 · 가입비 ·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고	기	준
○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익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참고】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 ▶ 근거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업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 ▶ 기타 법령
 -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 19-9호)」 [공정거래위원회]

업 종	위약금 기준
헬스 · 피트니스업, 요가 · 필라테스업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

- ※ 요가 · 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음(법령 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제10048호, 02.12.2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